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3일 · 월요일

남편 끝없는 트집...날마다 폭력 “아내 아닌 매맞는 인형”

주먹질서 차츰 각목사용도...“아들 버리고 집나와 심한 자책감”

어느 가출주부가 밝힌 ‘8년 매질’

임아무개(32·여)씨는 어린아날인 지난 15일 홀로 한강시민공원을 찾았다가 봄놀이를 나온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켰다.

“일곱살 된 아들이 보고 싶지만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남편의 성난 얼굴이 떠올라 그저 달아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임씨는 결혼 8년 동안 계속된 남편 강아무개(40·보일러공)씨의 폭행에 견디다 못해 도망쳤다. 자신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남편의 주먹은 피해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임씨는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요즘도 악몽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전라도 산골에서 상경해 회사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강씨와 2년 동안의 연애 끝에 86년 결혼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기를 무작정 따라와 말을 걸던 남편의 투박한 인상이 믿음직했다. 형편이 어려워 못해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지 못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가꿀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신방을 차린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임씨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은 밤마다 폭군으로 변했다. 거의 매일 만취한 채 들어와 주먹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밥상에 그릇이 잘못 놓였다” “음식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는 등 남편의 트집은 끝이 없었다. 때리는 방법도 주먹질에서 각목이나 병으로 내리치는 등 갈수록 난폭해졌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나를 짓밟으면서 여자는 복어 패듯 패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도 임씨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고 모자가 함께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아버지에겐 응석을 부리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밖으로만 나도는 아들을 보는 것도 임씨에게 또다른 고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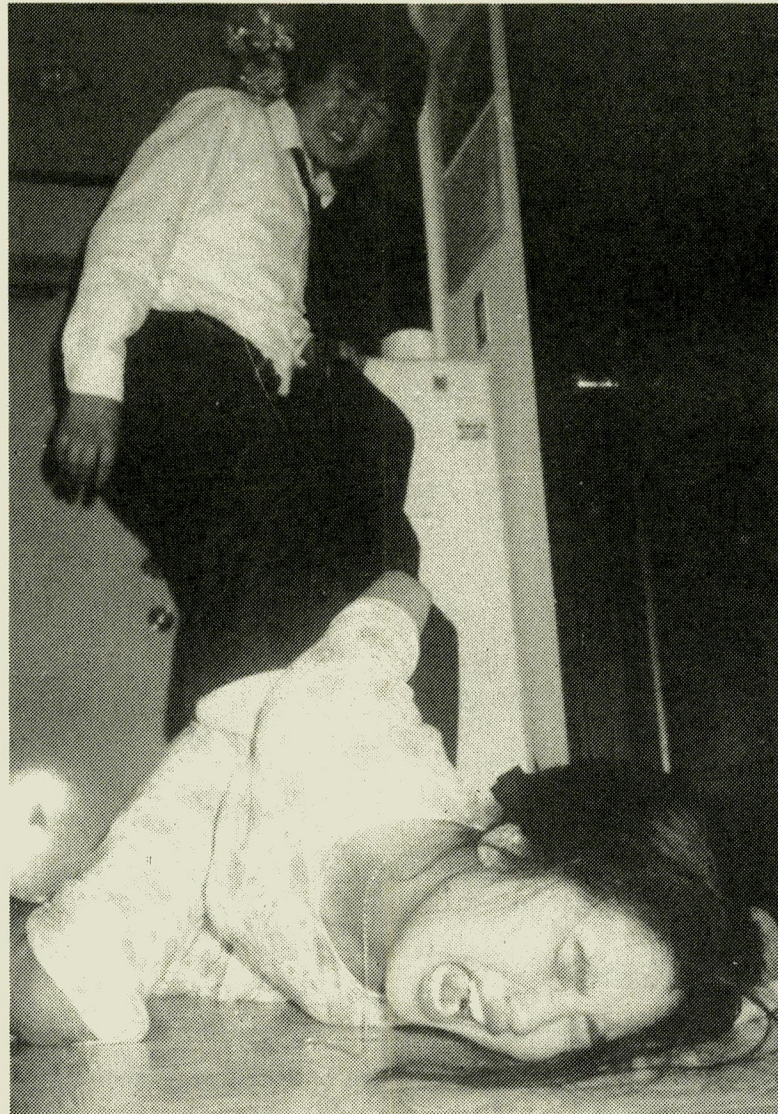
“애가 보는 앞에서 맞는 일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 나는 인간이 아니라 매맞

는 인형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미웠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나 자신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던 임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와 한 음식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음식점 골방에서 잠자던 임씨의 얼굴에 주먹세례를 퍼부었다. 임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끌고온 남편은 “술집에서 몸을 팔지 않았느냐”며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발을 묶은 뒤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새벽녘까지 얻어맞아 피부성이 된 채 널브러진 임씨는 남편이 조는 틈을 타 기어어나와 옆집 보일러실에 숨었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임씨는 결국 학대받는 여성들의 피난처인 ‘쉼터’로 옮겨졌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진단서와 남편이 폭행할 때 찢은 각목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남편은 당당했다. 그는 “아내가 술집을 돌아다니며 외간남자와 놀아나 격분한 끝에 때렸다”고 둘러댔다. 진술이 엇갈리자 수사지휘를 맡은 검사는 임씨에게 대질 심문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남편이 두려



가정폭력은 가정파괴로 이어진다. 사진은 남편에게 맞는 아내의 실상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 영화 <굴레를 벗고서>의 한 장면.

워 응하지 않았고 남편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임씨는 몸이 회복되자 봉제공장에 들어갔다. 처음엔 아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젠 눈물도 말라버렸다. 아들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임씨는 “아들을 버리고 나왔다는 자책 때문에 괴롭다”며 고개를 떨궜다.

노형석 박민희 기자

구타당하는 아내 보호 외국 사례

선진국 이미 70년대 법 마련

미국 보호명령제·피난처 지원

프랑스 최소 징역2년에 벌금형

파키스탄 여성전용경찰서 운용

노형석 기자

외국에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구타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4천명이 남편의 손에 죽고, 여성이 살해된 사건 가운데 29%가 남편이나 남친구의 범행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학대받는 여성들의 안전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갖가지 법률제도와 복지체제가 이미 70년대부터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부인보호명령제와 피난처의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서비스 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거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의 가정폭력방지 법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부인보호명령과 일시보호명령, 피난처 규정, 손해배상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부인보호명령은 법원이 남편의 폭력행위를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오면 2주일 안에 내

려지는데 부부 격리, 주거지의 피해자 양도, 생계비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명령을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남편 구타로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아내의 뜻에 따라 남편을 집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77년 만들어진 주택시행령은 아내가 남편을 격리시킨 상태에서 자식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피해자가 기소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에 국가의 공적 기소제도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 남편에게 최소 징역 2년에 20만프랑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전용경찰서를 운용하는 등 아시아국가들도 상당수가 관련 법제를 두고 있는 상태다.